2022학년도

함께 행복을 만드는 힘을 가진 행복 공동체

- 학부모 교육자료 -

이 리 북 초 등 학 교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58길 11
교장실 (063)841-9924 교무실 (063)857-9163
행정실 (063)855-4912 Fax (063)842-0389
http://school.jbedu.kr/iribuk-e

2022학년도 학부모 교육자료

【 목 차 】

Ⅰ. 학교폭력 예방교육 ·····1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3

Ⅲ. 가정폭력 예방교육 ·····4

Ⅳ. 사이버폭력 및 중독 예방교육 ·····5

Ⅴ. 도박 예방교육 ·····7

Ⅵ.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9

Ⅶ.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11

Ⅷ. 청렴교육(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13

Ⅸ.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예방교육) ·····16

Ⅹ. 성폭력 예방교육 ·····18

Ⅺ. 흡연 예방교육 ·····19

Ⅻ. 교통안전교육 ·····21

XIII. 양성평등교육 ·····22

XIV.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23

Ⅰ.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출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강요	괴롭힘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 자료 출처 : (재) 푸른나무 청예단 1588-9128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푸른나무 청예단은? UN경제이사회에서 특별지위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전문 NGO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 교육, 화해・분쟁・갈등조정, 연구, 캠페인, 나눔 및 장학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1588-9128	심리·정서적 지원, 피해 및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교사 상담 사안처리 고충상담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
학교폭력 사이버상담	http://www.jikim.net/sos/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교육부・대구교육청 협력)	화해・분쟁조정 프로그램 (관계회복, 손해배상, 통합적 회복증진 중심 분쟁조정)
■ **이용문의 : 02)598-1640** ■ **홈페이지 : http://www.jikim.net** ■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 1588-9128**	

학교폭력의 징후

	가정 내에서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6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7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8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9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0	이전과는 다르게 분노, 감정폭발 등의 공격행동을 한다.

* 자료 출처 : (재)푸른나무 청예단 1588-9128

평소 가정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통한다면 학교폭력은 예방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 탑재

1. 어울림프로그램 및 어깨동무학교 관련 자료
   가.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http://stopbullying.kedi.re.kr)
   나.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2.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자료
   가. 에듀넷-티클리어(http://www.edunet.net/nedu → 정보통신윤리교육)
   나. 언어폭력 예방 및 학생언어문화개선 관련 자료
   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kfta.korea.com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에듀넷-티클리어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

Ⅱ. 아동학대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등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등

성 학 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및 강요하는 행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조숙한 성지식
- 타인,동물,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위축, 환상, 퇴행행동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등

방 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

3.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동지킴콜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24시간 신고접수), 112 신고접수 후 관할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됩니다.

부모되기 십계명

하나.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셋.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다섯.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일곱. 아이 일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아홉. 아이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세요.
둘.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넷. 때리지 마세요.
여섯.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덟. 아이에게 하는 사과를 부끄러워 마세요.
열. 아빠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에 더 신경쓰세요.

Ⅲ. 가정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의 요인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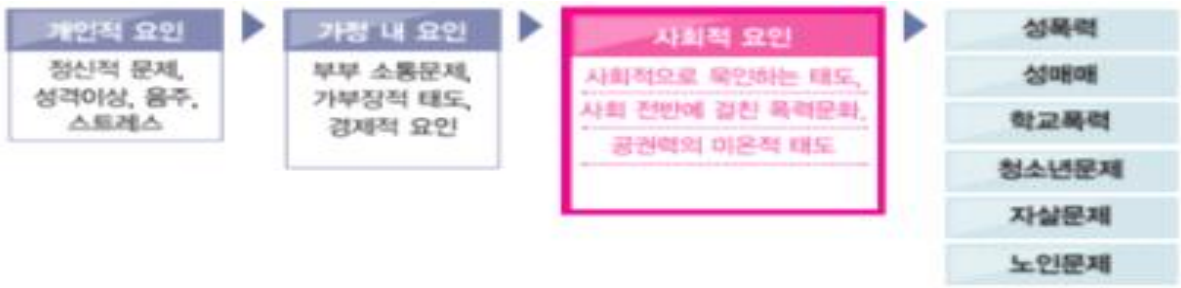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높다.

가정폭력은 아내를 향한 폭력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지니며,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관계를 맺는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다.

3. 가정폭력신고 및 지원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366번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번, http;//lawhome.or.kr)

·**쉼터 입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Ⅳ. 사이버폭력 및 중독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코로나로 인한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은 원격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해주며, 다양한 정보 및 양질의 교육 자료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 중독, 유해정보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정보 통신윤리 교육 및 스마트기기 관리 사이트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 교육자료(8종)- 사이버 예방교육 목록 및 내용(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목	검색 키워드	주요 내용	바로 보기
자녀의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이버폭력, 사이버 불링, 사이버 따돌림,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기 쉬운 사이버폭력의 배경을 이해하고, 자녀 보호와 지도를 위한 예방 수칙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과의존, 스몸비, 예방교육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하는 각종 스마트기기의 과몰입(중독)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고, 디지털시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스마트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버 음란물!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음란물, 아동, 성범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해, 내 자녀는 예외라는 편견과 방심을 버리고,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들이 접하는 경로 및 예방방안 등을 안내합니다.	
게임과몰입, 우리 아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게임 과몰입, 게임중독 예방, 게임 이용습관, 예방교육	다양한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하는 게임! 무작정 하지 못하게 하는 지도보다는 부모님이 게임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과몰입(중독)을 예방하거나 위험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의 눈높이에서 지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안내합니다.	
인공지능시대, 디지털시민성과 정보윤리 왜 필요할까요?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정보윤리, 미래역량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주역들에게 필수 미래 역량인 디지털 정보윤리, 디지털시민성을 이해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합니다.	
디지털 평판관리! 왜 필요하죠?	디지털 평판, 디지털 족적, Digital Footprint, 디지털 평판관리, 예방교육	인공지능시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면대면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공간으로 우리의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기술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디지털공간에서 자신의 언행 등 디지털 족적(Digital Footprint)의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본 자료에 관련 정보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 아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미디어교육 미래역량	지능정보사회, 21C 미래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로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자녀교육을 위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합니다.	
마음 달래주기! 아이와 공감해 보세요.	자녀, 공감, 소통, 자녀 사춘기, 청소년 생리적 특성	부모님들이 청소년의 생리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합니다. 더불어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배려·공감·소통하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교육 정보도 제공합니다.	

2.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

pc 및 스마트폰 사용 관리, 유해정보 차단 앱(사이트) 안내

☞ **PC 사용관리: 그린 I-NET**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입니다.

http://www.greeninet.or.kr 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모바일팬스, 구글 패밀리 링크, 액스키퍼, 사이버안심존, 스마트 안심드림 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입니다.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3. (여성가족부) 슬기로운 인터넷·스마트폰 생활 (자녀 지도 자료)

Ⅴ. 도박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사행심('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뽑기방,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템 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입니다. 이에 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사행성 게임의 유형, 자녀의 사행성 게임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 사행성 **게임 문제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의 모든 도박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사행산업관련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및 언론보도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학년 별 위험 및 문제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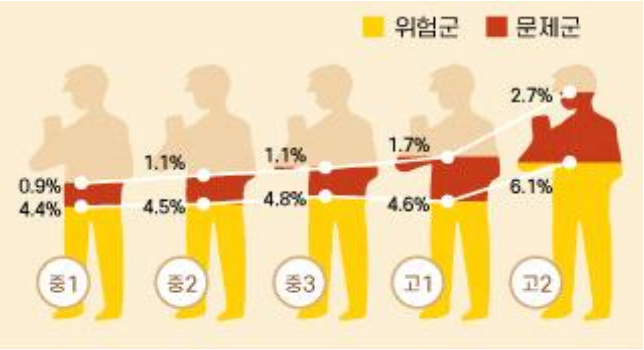

지역별 위험 및 문제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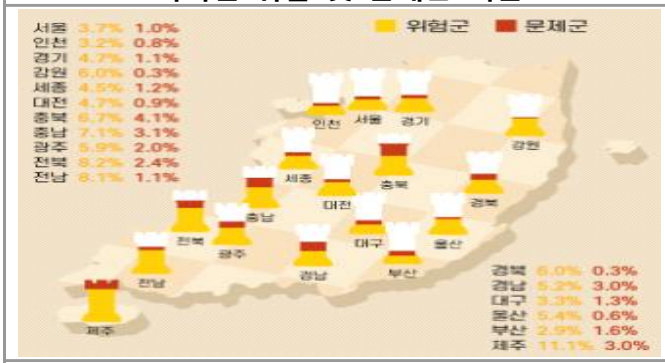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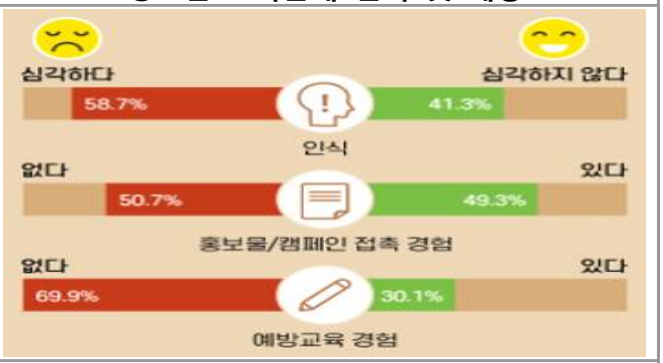

※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 '15년 조사대비 '18년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의 비율은 **1.3%** 상승**(5.1%→6.4%)**
-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제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2.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됨
-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충북(4.1%)**로 문제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남(3.1%), 경남과 제주(각3.0%) 비율로 조사됨
-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재학 중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함, 그에 반해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30%에 불과함

<최근 언론 보도>

- [한마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위험** 수위 넘었다 [조선일보 19. 2 .14]
- **도박에 물든 청소년,** 2차 범죄 우려 [금강일보 19. 1 .28]
- **'도박에 빠진 아이들'...** 교육 당국 예방교육은 미진 [뉴스핌 19. 1. 16]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는 돈, 평균치 10배 넘어 [아시아경제 18. 12. 25]
-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입건 청소년 402명** [이데일리 18. 10 .22]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 **SNS를 통한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접근**
  - SNS,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확산
  - 청소년들이 이용자 **모집책인 총판**을 담당하기도 함(모집 이용자가 돈을 잃으면 10~30%, 돈을 따면 1~3%의 이익을 취함)
-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이메일 및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하여 쉽게 청소년들에게 노출**
- **사행성게임 : 불법 스포츠도박(사설토토), 불법 인터넷도박(사다리, 달팽이, 소셜그래프 등)**

  ※ 게임 속 유료 확률형 아이템 또한 사행성이 높아 주의요망

□ 도박문제 발생의 징후

<금전문제>	<도박행동>
ㅇ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이 자주 발생한다. ㅇ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ㅇ 알 수 없는 명의로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ㅇ 집단으로 모여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ㅇ 도박 관련 용어나 은어를 자주 사용한다.(토쟁이,총판,먹튀 등) ㅇ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하다.
<대인관계>	**<가정생활>**
ㅇ 대인관계에서 짜증이나 신경질을 자주 낸다. ㅇ 딴 생각이 잦아지고 혼자 있으려 한다. ㅇ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ㅇ 부모님께 거짓말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혹은 대화를 피한다.) ㅇ 가족의 돈을 훔치거나 집안의 귀중품이 없어진다.

□ 자녀가 사행성 게임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행성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자녀에게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ㅇ 자녀를 윽박지르고 야단치기 보다는 왜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 게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경청합니다.

ㅇ 학교에 문제를 알리고, **전문적인 상담(1336)**을 요청합니다.

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전문상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kcgp.or.kr) →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 예방교육 문의: 예방사업팀 담당자(☎02-740-9032)	**온라인 상담**: 도박문제 넷라인(http://netline.kcgp.or.kr) 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이용 **전화상담 및 상담신청:** 국번없이 **1336**(24시간 364일 상담 가능)
[당부의 말씀] 자녀에게 문제 발견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최우선입니다	

Ⅵ.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해 생각하기

인권과 인권교육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등의 모두를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인종과 국가, 민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과 평등 그리고 우호의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등의 공식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제도, 가족, 매스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의 모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

♥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의 인권지수를 체크해 보시고 인권과 관련한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가 체크(v)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장애 인식 개선(장애인 인권)

어느 장애학생 어머니의 시	가정에서의 장애이해교육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리며 내 속에 온갖 꿈을 담아 키워 온 열 달 너는 나의 전부였다. 행여나 너를 걱정하며 먹는 것조차 가리면서 세포를 키워 온 어미 긴 장막을 나온 너의 모습은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나의 보물 내가 죽어도 네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눈을 감지 못할 어미새의 눈물 사랑한다. 내 작은 소중한 아들아...	가. 장애인 이라는 말을 장난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나. 친구의 엉뚱한 대답이나 잘 못하는 행동을 비웃지 않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다.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켜봐 줄 수 있도록 한다. 라. 친구의 잘못된 행동은 비난하기 보다는 바른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Ⅶ. 생명존중 · 자살예방에 대해 생각하기

- 상처받은 마음에 따스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

우리 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최고 수준(OECD 국가 중 1위)이며, 10대 청소년의 시망원인 중 자살이 1위(2019, 통계청)라고 합니다. 최근 일반 서민들의 잇단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자살 전염섬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은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강한 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자신들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진정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1. 어린이·청소년 자살의 특징

- 발달 단계적 특성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이다.
-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
-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2.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그 원인이다.**

☞ 자살은 한 가지 이유 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동안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 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 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훈계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죽을 거야."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섣불리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자살의 요인

-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우울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궁핍,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잔소리와 꾸중이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자 보도가 청소년 자살을 유발시키고 있음
- 고층아파트 주거환경이 청소년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일이 있음

자살의 위험 요소와 예방

1. 자살의 위험 요소(자살 경고 표시)

-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
-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 성격이 갑자기 변하고 성적이 부진 해진다.
- 자살을 표현하는 경우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잠들어 깨지 않으면 좋겠다." 등의 메모)
-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
-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거결석, 가출하는 경우
-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변화 등
- 이전의 자살 시도, 빈번한 자살에 대한 생각
- 구체적인 자살계획(특히 그 계획이 치명적인 경우)
- 알코올 사용이 동반되었을 때
- 부모나 주변의 지지가 부재하는 경우

2. 자살의 예방과 대처

- 비판 / 충고 / 설교하지 말고 경청하기
-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학생이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열어 놓기
- 자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보살펴주기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봐주시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강한 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자신들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진정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Ⅷ. 청렴에 대해 생각하기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데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은 절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 · 방과후교육활동 · 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 불법찬조금 유형 >

■ 자생단체(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체육대회,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각종 관행적 경비 부담 / 자율학습·심화학습반 운영비 / 스승의 날, 명절 등 교직원 선물비 / 학생간식비 등

■ **운동부 학부모 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

❑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 · 운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조성 · 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 교직원 수당 · 연수비 · 체육복구입비, 일반수용비, 각종 협의회비 등 사용 불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있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학교행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 불법모금에 비협조시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여 동조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 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 신학기 및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자녀 진학 상담 등의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촌지(금품) 제공

-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 및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 제공 등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 모금 · 집행**

-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에 대한 반감
- 학교회계 편입시 예산집행에 대한 불편함(학교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반발

❑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징계처분 등)

❑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형사처벌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알보는 청탁금지법

Q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O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O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Q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O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Q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O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X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X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Q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X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Q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 063-239-3299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본 자료는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IX. 선행학습예방에 대해 생각하기

□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추진 경과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 개정

※ (법개정 사항)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 개정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15~’19학년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참고자료1] 선행학습 폐해 (연수 자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Ⅹ. 성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1. 성폭력 예방수칙

(1)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도와주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급상황을 가장할 때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보다 다른 어른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므로 " 다른 어른들께 부탁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3) 친절하게 다가올 때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부탁을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안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4) 선물을 이용할 때 -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5) 아는 사람인 척 할 때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6) 혼자 있을 때 - 만약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다면 가족 이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7) 친구끼리 장난으로 생식기를 만질 경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안됩니다. 그럴 경우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1) 평소에 일어난 일을 항상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상 잘 들어주는 부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몸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을 시킵니다.

(3) 평소 자녀가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낼 때 피하지 않습니다.

(4) 자녀들과 함께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합니다.

(5) **범죄예방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 음란물을 보면 만지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세요.

➡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졌다면, 최대한 빨리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합니다.

(6) 낯선 사람이 친구를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즉시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가르칩니다.

(7) 성폭력 사실을 말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했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도와줄 사람은 부모나 선생님이므로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8)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어른의무)**

반드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

- **그린 I-Net (http://www.greeninet.or.kr)**
-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청소년 권장 사이트**

http://www.iteennet.or.kr/ 청소년 권장사이트(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ausung.net/ 탁틴내일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마트보안관**』: 스마트폰에서 유해정보(사이트) 차단 앱

3.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1)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2)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간다.
(48시간이내, 응급피임약은 72시간 안에)

(3)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아동학대 신고: 117 또는 112**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전북해바라기센터(278-0117)에 알려 도움을 받는다**

XI. 흡연 예방에 대해 생각하기

1 담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 담배 잎을 말려서 잘게 썰고 담배의 특유한 맛을 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데 특히, 담배가 타면서 4,000여종의 화학적 유해물질이 발생

♧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 3가지 성분

대표물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특징/ 작용	• 중독물질 (금연실패의 원인) • 혈관수축작용	• 아스팔트의 원료 (끈적임) • 발암물질	• 배기가스와 동일성분 • 각 조직에 산소공급 방해
유발 질병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말초 조직이 썩게 되는 **버거씨 질병**	끈적이는 특성으로 **전신**에 달라붙어 **각종 암**을 일으킴 **치주염, 입 냄새**	산소부족으로 **두뇌활동저하, 뇌세포 손상, 폐질환, 노화**

♧ **담배회사의 마케팅 대상은 청소년!!**

이미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이들 흡연자들은 담배회사에게는 '어항 속 물고기' 와 같은 존재 일 뿐입니다. 실제로 담배회사의 내부 기밀 문건에서는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 원의 대상이 고등학생, 혹은 10대 청소년 및 20대 젊은 성인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간접흡연과 3차 흡연

♧ 간접흡연: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3차흡연:**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차 흡연 :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 옷.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흡연 아빠 자녀들 백혈병 위험 15% 높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면 자녀의 암 발생률 44% 높아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흔한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이 적어도 1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텔레손 어린이 건강조사연구소 연구팀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가진 어린이 약 4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가족과 백혈병이 없는 같은 나이 아이들 800명의 가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이들 생각에 아빠가 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 가량 높았으며, **아빠가 하루에 적어도 20개비를 피우는 아이들은 암 진단 가능성이 44% 높게 나타났다.** 수치가 15% 높아지는 것은 20만 명당 6명이 걸리는 경우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2011.12.15.자 코메디닷컴뉴스 발췌>

♧ **간접흡연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

1)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하는 것이다(특히,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2)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서는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운다.
3) 차안에서 어린이가 같이 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4)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어린이 곁에 갈 것.
5) 담배를 빼 문 채 젖병, 장난감 등 어린이가 가까이 하는 물건을 만지지 말 것.
6) 아기를 안거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

3 금연의 효과

♧ 금연 8시간: 혈액속의 일산화탄소 양이 정상으로 떨어진다
♧ 금연 12시간: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한다
♧ 금연 48시간: 말초신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후각, 미각)
♧ 금연 72시간: 기관지가 이완되고 호흡하는 것이 쉬워진다.
♧ 금연 2주: 혈액순환기능이 좋아진다.
♧ 금연 9개월: 기침, 피로가 감소한다. 전반적인 체력이 증가한다.
♧ 금연 1년: 심장마비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 금연 5년: 심장마비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XII. 교통안전에 대해 생각하기

-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르게 대처합시다 -

하나,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은 사고의 지름길이랍니다. 꼭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해요, 길을 건널 때는 뛰지 말고 반드시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와 거리가 먼 오른쪽으로걷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어요.
꼭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길을 건너야 합니다.

셋,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사고

차와 거리가 먼 오른쪽으로 걸어야 안전하며, 꼭 손을 들어서 '제가 먼저 갈테니 멈춰주세요' 라는 뜻을 밝히세요. 그 다음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에 건너가야 합니다.

넷, 주-정차된 차량사이 횡단사고

여러분이 멈춰있는 차량 사이에서 뛰쳐나가면, 천천히 걷는 것보다 사고발생률이 18배나 높습니다. 반드시 손을 들어 운전자와 눈을 맞춰 '차량 멈춤' 을 확인한 후에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다섯,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길 건너편에 엄마나 친구가 있다고 왼쪽과오른쪽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길을 건너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길을 건널 때나 차도로 날갈 때면 항상 먼저 걸음을 멈춘 후 차가 오는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살핀 다음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여섯, 버스의 바로 앞 뒤 횡단사고

어린이 여러분이 버스의 앞과 뒤로 뛰어가면버스에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버스에서 내려길을 건널 때에도 운전자가보이는 거리 (버스에서 3m정도)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살핀 후 건너야 안전합니다.

일곱, 큰 차가 회전하다가 나는 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는 절대로 차가 다니는 차도로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커다란 버스가 급하게 회전하다 보면 앞바퀴 보다 뒷바퀴가 안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반드시 인도 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덟, 차 뒤의 밑에서놀다일어나는 사고

어린이 여러분, 멈춰있는 차는 대부분 뒤로 움직이므로 절대로 차의 뒤나 밑에서 놀면 안됩니다. 또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에게는 어린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차 밑으로 물건이 들어가면 꼭 어른에게 꺼내달라고 도움을 청하세요.

XIII.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알아보기

가. 성차별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 ①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② 우리 학급에서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

③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④ 남자는 슬퍼도 울면 안 된다.

나. 성차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 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③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양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다. 성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 남자는 중요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공주같이 예쁜 딸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여자니까 예쁘게 걷고, 예쁘게 말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집을 잘가지 설거지는 여자인 네가 해라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출처>여가부

XIV.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교육자료

교 권 침 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권침해 유형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 훼손, 수업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등
◦학부모: 폭언,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 · 고발 등

영역	내용
교권침해 학생조치 (제18조)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제15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제15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제30장(**협박**의 죄) ◦「형법」 제2편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42장(**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활동 관련 상담을 위한 절차

○ 전화 상담 시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 휴일, 늦은 시간, 이른 새벽 시간은 되도록 피함.

※ 근무시간 외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으나, 교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

○ 전화 상담 전에 편안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함.

○ 방문 상담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함.

○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김.